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는 공동체이념의 해체에서 비롯됐다.

남의 자식문제는 내 알 바가 아니고 정부도 알 바가 아니라는 식의 극단적 이기주의가 만연해 있다. 그러나 로빈슨 크루소처럼 무인도에서 혼자 살지 않는 한, 각자가 이기주의만을 추구하는 것은 이 사회를 병들게 할 뿐이다.

문제많은 새 '영유아법'

최근 민자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영유아보육법은, 보육료는 수혜자 부담으로 하고 재정지원은 정부가 임의로 할 수 있게 규정, 공동체이념과는 거리가 먼 반복지입법이 되고 말았다.

'사회보장법'이란 국민에게 생존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져야 한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과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을 보면 국가의 탁아 봉사를 철실하게 바라고 있는 국민들에게 이러저러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회보장을 하겠노라는 굵가의 구체적인 의무규정이 없다. 오히려 정부의 이러저러한 방침에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한다는 식의 규제조항만 가득하다.

법이란 정부의 정책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비로소 생기를 얻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영유아보육법과 정부의 관련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가지 건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재정지원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지금까지 모호한 조항만을 두고 그 시행에 있어서는 정부가 임의대로 관련인물 위주로 지원대상 보육시설과 어린이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던 관행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 복지국가의 이념에 걸맞게 탁아지원선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지원대상 보육시설도 '필요가 있는 곳에 분배한다'는 원칙 아래 공정하게 결정돼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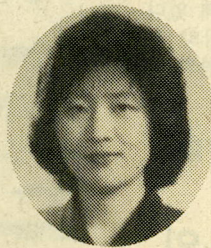
둘째, 재정지원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 탁아 봉사를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맞벌이 가정은 아무리 저소득이라도 월 7만원 소득 이하라는 생활보호대상자가 될 수 없다.

벌칙없는 의무조항도

따라서 지원 대상 저소득 기준을 '생활보호대상자 등' 이라고 비현실적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최저생계비의 100% 해당자는 전액, 120~150% 해당자는 70% 지



복지 뒷걸음질 치는 보육정책



박 주 현

원' 등 현실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셋째,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사업장의 범위를 현실화해야 한다. 이미 남녀고용평등법에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육아시설 설치 의무조항이 있으나 위반자에 대한 벌칙도 없다. 육아시설을 설치하면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조항을 두면서도 1천명 이상의 사업장만을 설치의무 사업장으로 규정한 것은 엄청난 후퇴입법이다.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학교는 인원제한 없이, 병원·은행 등은 50명, 생산직 공장에는 3백명을 기준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 또 기혼여성 노동자들은 대부분 1백인 이하의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음에 비추어 3백명 이하의 생산직 공장에는 공동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본다.

넷째, 보육시설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양질의 교육을 해야 한다며 기존 보육시설을 규제 폐쇄하려는 의도를 중단해야 한다. 최근 문 잠긴 방 안에서 아이들이 질식사하는 사고가 꼬리를 몰고 있다. 지금의 추세대로 나간다면 2000년, 아니 2010년이 되어도 아이들의 울음은 그치지 않을 것 같다. 양질의 교육은 적절한 재정지원으로 확보되어야 하지, 예컨대 10명의 아이들 중 5명은 방안에 가두어 놓고 나머지 5명만에 대해 최상급의 교육을 시키는 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는 보육시설의 통제에만 관심이 많은 것 같다. 그러나 통제를 강화할 경우 자칫 제도교육의 문제점과 병폐가 아동보육에까지 옮겨질 우려가 있다. 지나친 통제와 간섭은 보육시설의 확산에 결정적 장애가 되고 있다.

소규모 시설 위주로

끝으로 대규모시설 위주의 보육정책을 방향수정해야 할 것이다. 대규모시설이 보기에 번듯하고 규제하기도 좋겠지만 대규모시설 위주의 정책은 전시행정 내지 편의행정이랄 수밖에 없다. 아이들은 '가정과 같은 아늑한 분위기'에서 자라야 하므로 시설 규모의 크기는 오히려 제한해야 한다고 충고하는 사회학자들이 많다. 시설 규모를 제한하면 우리의 주거와 교통현실에 비추어 시설이용의 편리라는 이점도 제공하리라고 생각된다.

<변호사>